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271

발의연월일: 2022. 7. 4.

발 의 자:김상훈·김예지·김태호

배준영 · 송언석 · 신원식

이만희 • 이양수 • 조수진

홍문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·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으나, 관련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러나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,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과 그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은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 내 입지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장과 지식산업·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에대한 복합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점이 많으므로 현 지방세 감면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 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하여 계속 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의2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	제58조의2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
한 감면) ① 「산업집적활성화	한 감면) ①
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	
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	
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	
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	
라 <u>2022년 12월 31일</u> 까지 지방	<u>2025년 12월 31일</u>
세를 경감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